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53호 2023. 3. 28.(화)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선 람	기관 의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 고】**

제2023-680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

제2023-68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1

제2023-695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공주시 공고 제2023 - 680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및 시행(2023. 3. 15.일자)에 따라 기존 새마을장학금 지원 근거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새마을 장학금 관련 조항 삭제 필요

※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시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새마을 관련 내용 삭제완료

### 2. 주요내용

장학생 지원사업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삭제

-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의 명확성과 타당성 마련을 위하여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함에 따라 기존 지원 조례규칙의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 내용 삭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활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지역활력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738 /

FAX: 041-840-2338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지역활력과 새마을자치팀 (☎ 041-840-8738)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2338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 ④ (생 략)</p> <p>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부녀·문고·직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새마을유공자에 한정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가. <u>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학생으로 한다.</u></p> <p>나. <u>삭제</u></p> <p>다. <u>특기생 장학생 선발은 호행 및 기능·예능·체육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u></p> <p>라. <u>새마을유공자 장학생 선</u></p>	<p>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발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  
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  
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  
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의 자녀

2. 제1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는 새마을지도자(사망  
시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읍  
·면·동장에게 장학금을 신  
청한다.

3. 읍·면·동장은 제2호에 따  
라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매 학년마다 별  
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  
게 추천한다.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장학생으  
로 선발할 때에는 제5호 각 목  
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매 학년 개  
시 후 2/4분기 이내에 확정하  
여야 한다.

5.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 선

발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1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새마을운동 관련 훈장, 포상,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3) 충청남도지사,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4)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정하는 단체 회장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2순위는 학업성적우수 학생으로 한다.

다. 3순위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하며,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라. 4순위는 특기생으로 한다.

6. 장학생 선발인원은 새마을지

도자 정수의 5퍼센트 범위로 하며, 장학생 선발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비율이 다를 경우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7. 장학금 지원 인원은 새마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8.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 공주시 공고 제2023 - 685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 시행되었기에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붙임 1]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 관련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589(2023.2.28.))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 이유 :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1]

- 제1호 일비(1일당) 20,000원 ⇒ 25,000원

- 제2호 일비(1일당) 20,000원 ⇒ 25,000원

숙박비(1박당)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 100,000원,

광역시 60,000원 ⇒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70,000원,

식비(1일당) 20,000원 ⇒ 25,000원

3. 입법예고 기간 : 2023. 03. 28. ~ 2023. 04. 17.(20일간)

####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7일까지 공주시장(참조: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과(서무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1, 3층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41-840-2589 / FAX: 041-840-2307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서무팀 (☎ 041-840-2589)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층 행정지원과

☐ FAX : 041-840-2307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1]

- 제1호 일비(1일당) 20,000원 ⇒ 25,000원

- 제2호 일비(1일당) 20,000원 ⇒ 25,000원

숙박비(1박당)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 100,000원,

광역시 60,000원 ⇒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70,000원,

식비(1일당) 20,000원 ⇒ 25,000원

(단위 : 원)

구분	현 행			개 정 안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20,000	실 비	25,000	25,000	실 비	25,000
제2호	20,000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25,000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구   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20,000	실   비	25,000	제1호	25,000	실   비	25,000
제2호	20,000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제2호	25,000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공주시 공고 제2023-695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타 조례 개정으로 온누리 시민제도의 마일리지 적용 부분이 중복됨에 따라 일부 삭제하여 온누리 공주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 가맹점 모집방식 변경, 마일리지 사용 전환 등 다양한 시책의 적용으로 생활인구인 “온누리 공주시민” 모집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신규 개념 적용, 적합한 목적으로 재정립

- (개정안)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 온누리 공주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발전을 통해 공주시로의 생활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사유) 새로운 개념(생활인구) 적용, 적합하지 않은 개념(도·농교류 촉진 등) 제외

**제2조 정의** 명확한 제도 개념으로 수정

- (개정안) 다양한 형태로 공주시에 연고가 있거나 공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온누리 공간에서 온누리 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공주시민과 동일한 권리, 의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제도
- (사유) 불필요한 어구 삭제

**제6조 혜택** 타 조례 적용사항 반영

- (개정안) 시 문화재 관람료 50% 할인
- (사유)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제8조 제3항과 일치

**제6조의 2 마일리지 제공** 일부 내용 삭제, 지역화폐로 전환 추진

① (제2항) 마일리지 운영기준 일부 내용 삭제 (별표 2)

- (개정안)

구 분	활 동 명	제 공 점 수	제한기준	비 고
사용	가맹점 사용		입장권 구매 (전액 가능)	사적지 (공산성, 무령왕릉, 석장리박물관)
			20% 이내	일반 가맹점

- (사유) 문화재 관람료 징수 재개(4.1)에 따라 온누리 공주시민에게 50% 할인되어 추가로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경우 중복 할인 적용 (무료 입장 효과 발생)

② (제3·4항) 지역화폐로 전환 추진

- (개정안) (제3항)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한다.  
(제4항) 가입 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 시 5,000점을 부여하고 온누리공주시민이 원하는 경우 공주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신설안-별표2)

구 분	활 동 명	제 공 점 수	제한기준	비 고
사용	가맹점 사용		20% 이내	일반 가맹점
			마일리지 범위 내	지역화폐 가맹점

- (사유) 온누리 공주시민의 마일리지 사용 유도로 시민 확보

## 제6조의 4 가맹점의 운영 市가 가맹점 직접 지정 권한 부여

- (개정안) 온누리 공주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시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과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사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민간 가맹점 모집 절차 간소화하여 온누리 공주 시민의 이용률 제고

## 기타 조항 일부 조·호 통합, 조문 이동, 문구 수정 및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3. 3. 28(화) ~ 2023. 4. 17(월)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미래전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미래전략실(고향사랑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225 / FAX : 041-840-2308

###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미래전략실 고향사랑팀 (☎ 041-840-2225)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8

##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과 관련하여 온누리시민제도의 발전과”를 “운영 및 발전,”으로, “공주시와 온누리공주시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농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을 도모함”을 “공주시로의 생활인구 확대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2.“온누리시민제도”이란 다양한 형태로 공주시에 연고가 있거나 공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온누리공간에서 온누리 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공주시민과 동일한 권리, 의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온누리공주시민약관을 정하고”를 “약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기 정착”을 “제도 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한 경제적 사회적”을 “위한 사회 경제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온누리공시민”을 “온누리공주시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온누리공주홈페이지 활성화와 온누리시민제 조기정착, 온누리공주시민확보 등을”을 “온누리공주 활성화(시민확보)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혜택)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온누리공주시민증 수여
2.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3.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4. 시 문화재 관람료 50% 할인
5. 시 주관 각종 축제·문화행사·팸투어 등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초청),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
6.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각종 이벤트, 공모전으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7.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온누리공주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8. 농지 및 농원, 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한(Owner제도) 주선
9.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10. 온누리공주시민을 단골고객화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의 제목 “(마일리지 제공)”을 “(마일리지 제공·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계산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행위”를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가입마일리지는 은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5,000점을 부여하고, 은누리공주시민이 원하는 경우 공주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 구매마일리지는 고맛나루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완료 시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6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은누리공주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에”를 “은누리공주홈페이지와 고맛나루 장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② 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매로 적립운영 관리하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4제1항 중 “정하여,”를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과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2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	가맹점 사용		20% 이내	일반 가맹점
			마일리지 범위 내	지역화폐 가맹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화폐 전환의 적용례) 조례 제6조의2제3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역화폐 시스템이 구현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의 <u>운영과 관련하여 온누리시민제도의 발전과 온누리공주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와 온누리공주시민 간 상생 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농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을 도모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운영 및 발전,</u> ----- ----- ----- <u>공주시로의 생활 인구 확대를</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온누리공간” 이라 함은 온누리시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구축한 “온누리공주홈페이지” 를 말한다.</p> <p>2. “온누리시민제도” 라 함은 <u>인터넷상의 온누리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공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온누리공</u></p>	<p>제2조(정의) ----- -----.</p> <p>1. -----이란 ----- ----- -----.</p> <p>2. “온누리시민제도” 란 <u>다양한 형태로 공주시에 연고가 있거나 공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온누리공간에서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공주시민과 동일한 권리, 의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제</u></p>

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온누리공주시민” 이라 함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삭 제

5. “온누리공주시민증” 이라 함은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을 말한다.

6. “온누리공주 가맹점” 이라 함은 공주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인, 음식점·숙박업, 각 박물관, 레저·스포츠업, 사찰, 체험 마을 등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7. “온누리공주시민약관” 이라 함은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

도를 말한다.

3. ----- 이런 -----  
-----  
-----.

5. ----- 이런 -----  
-----  
-----.

6. ----- 이런 -----  
-----  
-----  
-----  
-----  
-----  
-----.

7. ----- 이런 -----  
-----  
-----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놓은 것을 말한다.

8. (생략)

제5조(제도의 운영) ① (생략)

② 온누리공주시민약관을 정하고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누리공주시민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온누리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온누리공주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공주시와 온누리공시민 간 또는 온누리공주시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사업

5.·6. (생략)

-----  
-----  
-----  
-----  
-----  
-----  
-----.

8. (현행과 같음)

제5조(제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약관은 -----  
-----  
-----  
-----.

③ -----  
----- 제도 발전-----  
-----  
-----.

1.·2. (현행과 같음)

3. ----- 위한 사회적 경제적 -----

4. ----- 온누리공주시민 -----  
-----  
-----

5.·6. (현행과 같음)

7. 온누리공주홈페이지 활성화와 온누리시민제 조기정착, 온누리공주시민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Event) 개최

8. ~ 11. (생략)

제6조(혜택) ①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온누리공주시민증 수여
2. 삭제
3.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4.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5. 시 주관 체육대회, 축제·문화행사 등에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
6. 시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7. 온누리공주홈페이지 활성화와 온누리시민제 조기정착, 온누리공주시민 확보를 위해서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이벤트 및 공모전을 연 20회 이내 실시하여 당

7. 온누리공주 활성화(시민확보)를 -----  
-----  
-----

8. ~ 11. (현행과 같음)

제6조(혜택)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온누리공주시민증 수여
2.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서비스 제공
3.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4. 시 문화재 관람료 50% 할인
5. 시 주관 각종 축제·문화행사·팸투어 등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초청),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
6. 온누리공주홈페이지에서 각종 이벤트, 공모전으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7.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온누리공주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8. 농지 및 농원, 농·특산물의

첨자인 온누리공주시민에게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8. 온누리시민제도 발전을 위하  
여 활발히 활동하는 온누리공  
주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9. 농지 및 농원, 농·특산물의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  
한(Owner제도)주선

10.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  
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11. 시의 축제·문화행사에 참  
여하는 온누리공주시민에게  
시티투어 서비스

12. 온누리공주시민을 단골고  
객화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  
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특  
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  
매로 적립운영 관리하고 운영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며, 현금으로

경작 및 수확권한 등 사용권  
한(Owner제도)주선

9.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  
익한 정보의 제공

10. 온누리공주시민을 단골고  
객화 하기 위하여 시에서 판  
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특  
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의2(마일리지 제공) ① (생략)

② 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매로 적립운영 관리하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③ 마일리지는 사용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④ 가입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5,000점을 부여한다.

<신 설>

⑤ 활동마일리지는 홈페이지 로그인, 게시 등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행위할 경우에 부가한

제6조의2(마일리지 제공·사용)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가입마일리지는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5,000점을 부여하고, 온누리공주시민이 원하는 경우 공주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  
----- 계산한다.

<삭 제>

⑤ 구매마일리지는 고맛나루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완료 시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  
-----  
활동할-----.

다.

⑥ 구매마일리지는 고맛나루장터에서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실결제액의 3퍼센트를 구입 종료 시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조문신설 2011.4.1.)

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생략)

<신 설>

② 시장은 온누리공주시민이 온누리공주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마일리지는 결제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⑤ (생략)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의 누적접수에 도달한 온누리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초청행사, 팸투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의3(마일리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일리지는 가입, 활동, 구매로 적립운영 관리하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 온누리공주홈페이지와 고맛나루 장터에서 -----  
----- . -----  
-----  
----- .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삭 제>

(조문신설 2011.4.1.)

제6조의4(가맹점의 운영) ① 온  
누리공주 가맹점은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제6조의4(가맹점의 운영) ① ---

-----

--- 정하여 -----

----- . 다만, 필요에 따

라 시에서 직접 가맹점을 지정

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점과 필

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별표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마일리지 운영 기준(제6조의2, 제7조)					[별표 2] 마일리지 운영 기준(제6조의2, 제7조)				
가. 시민 마일리지					가. 시민 마일리지				
구 분	활 동 명	제 공 점 수	제한기준	비 고	구 분	활 동 명	제 공 점 수	제한기준	비 고
적립	시민가입	5,000	최초 1회	탈퇴 후 재가입시 미적립	적립	시민가입	5,000	최초 1회	탈퇴 후 재가입시 미적립
	게시하기	200	1일 3회	글 200자 이상 또는 사진1매, 글 100자 이상 적립		게시하기	200	1일 3회	글 200자 이상 또는 사진1매, 글 100자 이상 적립
	댓글달기	10	1일 3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에 해당		댓글달기	10	1일 3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에 해당
	공유하기	20	1일 3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에 해당		공유하기	20	1일 3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에 해당
	좋아요	10	1일 5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에 해당		좋아요	10	1일 5회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게시물에 해당
사용	가맹점 사용		입장권 구매 (전액 가능)	사적지 (공산성, 무명왕릉, 석장리박물관)	사용	가맹점 사용		20% 이내	일반 가맹점
			20% 이내	일반 가맹점				마일리지 범위 내	지역화폐 가맹점
소멸	2년간 미사용				소멸	2년간 미사용			